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790호 2013년 8월 1일(목)

공 고

○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

2013년 7월 23일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도로지정조서 참조
3. 도로길이 : 도로지정조서 참조
4. 도로너비 : 도로지정조서 참조
5. 도로지정 면적 : 도로지정조서 참조
6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 번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면 적(m ²)		소유자	최초 허가번호 및 허가일	비 고
	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허가사항 변경일	
속초시 중앙동	468-58	18.3	1.5 ~2.4	351	34.82	양순옥	1996-신축허가 -제67호 (1996.04.22.)	금번 건축허가 (허가사항의 변경)에 따른 도로지정
							2013.07.23.	

[위치도 및 현황도]

